

주요 수산국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이 광 남*

Comparative Analysis on Fisheries Subsidies between Major Countries and Korea

Lee, Kwang-Nam

< 목 차 >

I. 서론	1. 한국의 수산보조금 유형
II.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 동향 및 각국의 입장	2. 한국에 없는 수산보조금 유형 분석
1. 최근까지 논의 동향	3. 분석 종합
2. 주요국들의 입장 분석	V. 정책방향 및 협상전략 제시
III. 주요국들의 수산보조금 현황 분석	1. 국내정책방향
1. 분석에 이용된 자료	2. 협상전략 수립
2. 유형별·국가별 현황 분석	VI. 결론
IV. 주요국과 한국간의 비교분석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WTO/DDA협상이 시작된지도 2003년 6월 기준, 벌써 약 1년 반이 지났으며, 협상기간이 2004년 12월까지임을 감안하면 협상기간도 약 절반이 지난 상황이다. 동 협상이 절반을 넘김에 따라 수산보조금 논의에 대한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향후 협상 방향이 각국의 보조금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조사 및 수산보조금에 대한 분류체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FFG¹⁾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의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FFG이 WTO/DDA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수는 다소 유동적이나 대략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랜드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에쿠아돌,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베네

* 접수 : 2003년 7월 28일 게재확정 : 2003년 8월 25일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lkn6530@chol.net

1) Fish Friends Group의 약자로 수산보조금의 축소 및 감축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총칭임.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들을 FFG로 통일하였음.

이 광 남

주엘라 등 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이 이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

최근까지 주요 FFG와 우리나라와 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비교·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이광남등(2000.12, 2001.12)이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내용들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감면(어업용 유류), 우대금리운영자금(영어자금), 가격지지(정부비축) 등에 한정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매우 제한적으로 국가들과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³⁾ 그 이외의 대부분의 논문 및 관련 보고서들은 국가별 수산보조금의 규모 및 분류 현황 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논문에서는 먼저, WTO/DDA 규범협상이 시작된 이후 최근 까지(2002.1~2003.6) 각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입장 검토와 주요국들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난 이후, 우리나라에 없는 수산보조금을 도출하여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의 제한적인 자료에 따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 OECD, APEC 등 주요 국제기구에 약 30여개국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수산보조금 자료들을 모두 취합·정리한 WWF자료⁴⁾를 기초로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정책방향과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II.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 동향 및 각국의 입장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은 여러 차례 제출된바 있으며, 각 국의 구체적인 의견제시는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DDA 협상이전에는 뉴질랜드('99.6), 미국('00.7), 일본('00.10), 한국('00.10), WTO/DDA 협상 이후인 2002년도는 8개국 공동('02.4), 뉴질랜드('02.7), 중국('02.6), 일본('02.7), 미국('02.10), 한국('02.10) 등이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제출된 제안서들을 살펴보면 WTO 규범회의(수산보조금) 제6차('03.2) 및 제7차('03.3)시 일본, FFG 6개국, 한국, 미국, 제8차('03.5)에서는 EC, 일본, 중국, 한국, 제9차(03.6)에서는 칠레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되었다.⁵⁾

동 논문에서는 WTO/DDA협상 기간이 2004년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동 협상이 약

2) FFG내에서도 관심사안은 제각기 달라서 ①미국은 수산보조금의 환경적 측면 ②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에쿠아도는 참치자원 ③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는 오징어 자원 ④ 아이슬랜드는 자국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EC 선단의 견제가 주요 관심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이광남등,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0.12), pp.97~107와 이광남등, WTO뉴라운드 수산분야 협상과 수협의 대응방안(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1.12), pp.61~82 를 참고하기 바람.

4) WWF는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s)의 약자이며, 수산보조금은 무역 왜곡 및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음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s)임.

5) www.mofat.go.kr, www.momaf.go.kr, www.wto.org 등을 참고하기 바람.

반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입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WTO규범 회의시 제출한 국가별 개별 수산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분석코자 하였으나, 제출된 국가들의 제안서에는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주요국들의 최근 입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⁶⁾

1. 최근까지의 논의 동향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WTO 규범" 협상분야 회의는 2002년 중 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요 FFG은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킴을 이유로 수산보조금을 규제(감축 내지 폐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수산보조금의 별도 협상 논의 문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FG 20여 개국들은 수산보조금을 제대로 규제키 위해서는 수산보조금을 별도로 논의하고 나아가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Sectoral Approach)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EC, 캐나다 등은 수산보조금을 현행 WTO 체제대로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General Approach) 입장을 견지하였다.⁷⁾

2003년도 들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및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EC와 캐나다가 입장을 전환함에 따라 협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EC의 입장전환은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개정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고, 캐나다는 최근 미국과 함께 WTO 차원의 별도 철강보조금협정(Sectoral Approach)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캐나다의 입장변화는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⁸⁾

이와 관련 주요 FFG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Sectoral Approach)을 고수하면서 수산보조금을 규제대상과 비규제 대상으로 구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EC의 경우는 수산보조금의 환경적 측면 검토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동수산정책 개정과 관련하여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요인은 수산보조금이 아니라 부적절한 어업 관리라는 기존 입장(General Approach)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도 이후 최근까지 일부국가들에서 구체적인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FFG 측의 대표격인 미국이 2000년 9월에 이어 2003년 3월 19일에 금지보조금의 확대등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제시한데 이어, 2003년 4월23일 EC가 어선건조지원 및 제3국으로의 어선이전 등을 금지보조금으로, 어업인 조기퇴직 및 전직지원 등을 허용보조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6)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적인 의견만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허용 및 금지 수산보조금 분류기준 제시는 미국(2000.7, 2003.3), 칠레(2003.6), EU(2003.4) 등에 불과함.

7) 여기에서 EC와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8) 캐나다는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 수산물 무세화를 주장하고 있음.

또한, WTO 규범 제9차 회의(2003년 6월23일)에서는 칠레가 어선구입·현대화 지원, 생산경비 절감, 세계·금융혜택 등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상업적 성격의 보조금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규제 논의에 앞서 수산보조금이 무역이나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수적인 열세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2003년 2월과 3월)에 개최된 WTO규범회의(제6,7차)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해 발언한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산보조금의 유형별 분류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지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산보조금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2003년도 이후의 협상 방향은 ①기존 쟁점(Sectoral vs General)에 대한 협상과 병행하여 ②각 국의 수산보조금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③현행 WTO/SCM(보조금협정) 개정, ④각 보조금별 규제방법 및 감축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각 국의 입장 분석

제7차 WTO/DDA 규범회의시(2003년 3월) 미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각국들이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하여 수산보조금에 문제에 대한 각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하였다.⁹⁾

동 회의시 미국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WTO 규범협상이 수산보조금 논의를 위한 가장 적절한 기구라고 밝혔으며, 수산보조금 협상의 목표는 과잉어획을 조장하거나 무역왜곡효과를 가지는 정부사업에 대한 보다 나은 규율을 만드는 것이고, 과잉어획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수산자원지속성에 기여하는 정부사업 및 개발도상국의 생계유지형어업(artisanal fisheries)을 위한 정부사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산보조금 분류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SCM)협정 틀 안에서 금지보조금(적색), 조치가능 보조금(황색), 허용보조금(녹색) 등의 이른바 교통신호와 같은 분류방식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금지보조금(적색으로 분류)을 확대하여 과잉어획을 직접적으로 조장하거나 기타 무역왜곡 효과를 가지는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금지보조금은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고 대상어업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9) WTO 규범 제7차 회의(2003.3.19~21) 결과 자료,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2003.4.

〈표 1〉 WTO 제7차 규범회의시 미국제안서(2003.3)에 대한 각국의 입장

국 가	각국의 입장 주요내용
한국	○미국제안서 반대 -기존 쟁점이 해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고, FFG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분류방식(Sectoral Approach)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traffic light system”의 판단기준에 의한 분류는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적용하였고,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원고갈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는데 어떤 분류방식이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음 -수산보조금 분류체계에 대한 주관기준은 FAO나 OECD가 보다 적절함
일본	○미국제안서 반대 -개발도상국의 생계유지형어업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반대 -EEZ내 자원은 공유자원논리 반대, - IUU어업 및 과잉어획문제는 CTE(무역환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호주	○미국의 입장지지 : 현행 SCM협정 틀을 유지/수산보조금에 대한 규범을 강화 찬성
뉴질랜드	○미국의 입장지지 : 현행 SCM협정 틀 유지/금지보조금 확대 찬성 ※과잉어획보다 무역왜곡 규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노르웨이	○미국의 입장지지 : 금지보조금 확대 찬성 ※어선 운영비 보조에 관심/수산자원관리 및 연구개발 등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요구
아르헨티나	○미국의 입장지지 : 금지보조금 확대 찬성 ※연안국 EEZ 입어지원 보조금 금지요구
페루	○미국의 입장지지 : 개발도상국의 생계유지형어업 협상대상 제외 및 금지보조금 확대 찬성 ※NGOs에 부정적 견해
아이슬란드	○미국 입장 적극 지지
필리핀	○미국의 입장지지 : 개발도상국의 생계유지형어업 협상대상 제외 동의
중국	○미국입장에 동조 ※양식어업 보조금 협상대상에서 제외 요구
캐나다	○미국의 입장 적극지지 : “현행 규범=수산보조금” 적정
EC	○미국의 입장지지 : 미국제안서=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

더 나아가 금지보조금의 확대와 병행하여 혹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dark amber” category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보조금은 수산보조금 지급국가가 해당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즉, “dark amber” category는 지금은 실효된 WTO의 SCM협정 6조 1항을 모델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데,¹⁰⁾ 예를 들어

10) SCM협정 6.1조에 의하면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6.1(a)],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6.1(b)],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수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됨

보조금이 생산가의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서에 대하여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만 반대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페루, 아이슬란드, 필리핀, 중국, 캐나다, EC 등 대부분의 나라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시 결과를 통하여 각국들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Ⅲ. 주요국들의 수산보조금 현황 분석

주요 수산국들의 수산보조금 현황 분석에서는 이용된 WWF 자료의 특징과 6개의 분류방식에 따른 약 30여개국들의 수산보조금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목적은 주요 FFG의 수산보조금 유형의 파악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수산보조금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1. 분석에 이용된 자료

지금까지 국제기구의 자료들중 어느 자료가 가장 상세히 각국의 수산보조금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먼저, OECD에서는 1996-97년 사이 OECD회원국의 직접지급과 비용감축재정이전 수치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 자료는 가격지지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어 지원총액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OECD는 1998-99년 사이의 최신자료를 포함해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러나 동 자료도 각 국 정부의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 폴란드 등 국가는 정부재정이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호주, 캐나다, 터키도 1999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WTO 자료는 회원국들의 보조금 현황자료 제출에 강제성이 없어, 일부국가들의 매우 제한된 수산보조금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수산분야에 대한 비용이나 가치 부분 자료가 생략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APEC 자료는 21개 회원국 중 중국을 포함한 19개국의 간접자본 및 어업관리서비스 등 모든 확인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산보조금의 비용관련 자료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World Bank자료의¹²⁾ 특징은 주요 수산국인 일본, 노르웨이 USA, 러시아, 중국 및

[6.1(c)조],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6.1(d)조] 등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동 조항(6.1조)은 SCM협정 31조에 의해 200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규범협상그룹 제2차 회의에서 캐나다가 동 규정의 부활을 주장한적이 있음(TN/RL/W/1).

11) 한국수산회, WTO/DDA 수산부문 협상관련 자료집, 2002.11. pp.243~244.

12) Milazzo, Matteo, Subsidies in the World Fisheries: A Reexamination,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406,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98.

주요 수산국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EC의 대출(loan)과 세제관련 혜택 자료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WWF 자료는¹³⁾ OECD, APEC, WTO의 종전 자료를 모두 취합해 수산분야 보조금 지급의 전반적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3개 국제기구의 자료중 중복하여 계상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최근까지 발표된 자료중에서 가장 정확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표 2 참조).¹⁴⁾

〈표 2〉 국제기구들의 수산보조금 관련 자료 효용성 검토

기구명	자료의 특성	정확성
OECD	-1996-97년 사이의 자료는 가격지지와 관련한 부분 누락됨(2000) -일부국가들 자료 미제출(2001)	+++
WTO	-일부국가들의 자료 미제출로 매우 제한된 자료만 제공	+
APEC	-19개국들의 19개국의 간접자본 및 어업관리서비스 등 모든 확인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산보조금 비용관련 자료 없음	++
World Bank	-일부 주요 수산국들의 대출과 세제관련 혜택, 비예산 지원 프로그램 제공	+++
WWF	-OECD, APEC, WTO의 기존 자료를 모두 취합해 전반적 내용 제공	++++

주) 정확성 정도 : + 많을수록 정확성이 큼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0여개국(96년 : 33개국, 97년 : 34개국)들의 수산보조금 자료들을 최근까지 모두 취합하여 정리한 WWF자료를¹⁵⁾ 이용하여 각국의 수산보조금 현황을 분석하였다.

WWF의 분류방법은 기존의 APEC 수산보조금의 분류방식을 취하여 크게 6가지 대분류로 나누었으며,¹⁶⁾ 각각의 보조금은 보다 세분화 된 보조금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6가지의 대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어업인과 어업 노무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소득지지 프로그램, 실직보험, 기타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급)
- (2) 대출지원(융자보증, 융자보조, Loan Restructuring, 기타 대출지원 프로그램)

13) WWF, Hard Facts, Hidden Problems : A Review of Current Data on Fishing Subsidies., A WWF Technical Paper, Appendix(II, III) : Country-by-country Listing of Total Reported Subsidies Programs, 2001.10.

14) WWF자료도 각국의 모든 수산보조금을 완벽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아니나,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가장 잘 수정·보완된 자료라는 의미임.

15) WWF, "Hard Facts, Hidden Problems : A Review of Current Data on Fishing Subsidies", A WWF Technical Paper., 2001.10.

16) 수산보조금에 대한 분류방식은 OCED, APEC, FAO, UNEP, 미국, 일본 등에서 제안한 체계가 있으나, 분류기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나타내고 있음. 해양수산부·KMI,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방안, 2001.6, P.159.

- (3) 세제 혜택 및 보험지지(유류세 면제, 소득세 지불 유예, 가속감가상각, 특정 투입·산출물에 대한 특혜세율, 선박보험 및 재보험 프로그램, 기타 세제혜택 및 보험지지 프로그램)
- (4) 자본 및 인프라지지(개발금융, 정부투자, 선대보수 및 현대화, 해외입어지급, Bait service, 경매 혹은 기타 판매편의 지원, 조선소 지원, 어항 인프라 강화, 항구 편의시설 및 정박 사용료 지원, 기타 자본 및 인프라지지)
- (5) 마케팅 및 가격지지(수출 마케팅 프로그램, 수산제품 유통촉진 프로그램, 시장가격 지지기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 (6) 어업관리, 연구 및 어획노력량 감축 및 보존(어업노무자 조정 프로그램, 어업인 재교육, 어선감척, 어업허가 취소 등, 자원강화 프로그램, 어업관리, 집행, 자원 평가 등, 신규어업 및 연구개발, 기타 어업관리, 연구, 어획노력량 감축 및 보존 등)

2. 유형별·국가별 현황 분석

국제기구별로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여 세계 수산보조금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APEC 에서는 약 127억불, World Bank(Milazzo) 110~135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나, WWF가 분석한 보조금 추정액은 약 150억불로 나타났다.¹⁷⁾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산보조금의 지급금액에 대한 분석보다도 수산보조금의 유형 및 종류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WWF의 6가지의 분류방식에 따라 나타난 자료를 국가별·보조금 유형별로 다시 재분류하여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

1) 어업인과 어업노무자에 대한 직접지원

어업인과 어업노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는 나라들은 12개국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럽국가들이므로 나타났으며, 지원방식은 크게 어업인들에 대한 조업 일시중단시 지원, 소득지지, 실직보험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어기 및 조업 일시중단시 지원, 어업인 소득지지, 실직보험, 운반비 보조, 컨설팅 보조, 선원임금 고정지지, Book-keeping 프리미엄,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지원, 생산자 지원, 특정지역의 연안어업자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업인과 어업노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들이고, 이러한 지원 방식은 이들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업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7) 한국수산회, WTO/DDA 수산부문 협상관련 자료집, 2002.11. pp.222~223.

<표 3> 국가별 어업인과 어업노무자에 대한 직접지원 현황

국명	유형	지원내용
벨기에	소득지지프로그램	선원의 고정임금 지원
	기타 직접 지원	Book-keeping프리미엄
캐나다	소득지지	소득지지, 폐업어민에 대한 소득지원
	실직보험	어업인 실직보험, 자가어업/고용어민 특별소득지지
	기타 직접지원	활동지원, 연방지역별 재원, 연방의 지역적 지원, 적극적 참여조치
덴마크	기타 직접지원	컨설팅 보조, 어업지원, 서부 Jutland 연안어업 지원
핀란드	실직보험	실직보험
	기타 어업에 대한 직접 지급	운반비(운송) 보조금, 연어어업 금어기 설정에 따른 어민보상금, 바다표범에 보호를 위한 연어어업 피해보상
프랑스	소득지지 프로그램	금지어업 일시 중단 지원, 어업의 일시중단(임시고용 허용)
독일	소득지지 프로그램	어선의 일시적 어선철수 직접 지급
아일랜드	어업인에 대한 기타 직접 지급	영세어업, 직접지원
이탈리아	소득지지 프로그램	일시적 어선철수지원
	기타 직접 지급	영세어업 지원
노르웨이	소득지지 프로그램	소득보장보상/휴업지지/실직보험
포르투갈	기타 직접 지급	지역적 지원, 영세어민 지원, 신규지원 조치
스페인	소득지지 프로그램	선주지원(일시조업중단), 일시조업중단 지원, 선주지원(일시조업중단), 어민개별보상, 자율공동체 재정이전, 제한적 조업중단 어민에 대한 일시지급, 일시조업중단(지역적 지원)
	기타 직접 지원	어업개선 지원 보조금
스웨덴	소득지지	어업활동 일시중단 지원, 생산자지원(수산물폐기분)
	실직보험	영세연안어업, 실업보험 지급, 지역적 지원
	기타 직접 지원	구조개선/조정관련 연구개발지원(어업/양식), 지역적 지원

2) 대출지원 프로그램

대출지원은 총 12개국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원 형태는 용자보증 및 용자보조 형태이며, 지원해주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영어자금과 같이 시중금리 이차차액에 대한 지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차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터키는 이차양허, 일본은 수협이 이차비용 공제 등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들 방법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제도상의 방법만 상이할 뿐,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의 결과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요 FFG의 어업인 대출지원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1996년까지 대부(loan)보장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어업의무보장프로그램(Fisheries

이 광 남

Obligation Guarantee Program)을 운영하였다. 1996년 이후로 어업금융프로그램(Fisheries Finance Program)으로 되었으며, 지금은 직접적인 대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두 프로그램들의 직접적인 효과는 대출을 통해 어업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어선감척의 기금으로 재정지원 되었고, 특정한 소형어업자들과 선원들에게 배정된 개별어업할당제(Individual Fishery Quota)하의 할당량을 구매하는데도 지출되었으며, 대출자금 규모는 약 25백만달러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알래스카의 수산물 생산 증대를 위하여 알래스카 수산회복증진대출기금(Alaska Fisheries Enhancement Resolving Loan Fund)에 의해 부화장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지원조건은 고정금리 1%, 지원기간 최고 30년, 10백만달러였고, 초창기 6~10년은 이자면제와 상환면제가 이루어지는 혜택이 주어졌다.

노르웨이의 경우 중고 및 신규선박구입용으로 1993년도에 국채수산은행에서 저리융자로 약 NOK 350백만달러(약 50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캐나다는 어업인들의 직업전환과 어업에 대한 의존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대출프로그램(FAP : Fisheries Alternative Programme)을 통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패류양식어업에 대해 고정금리 1%, 최고 10년간 지원해 준 것이 좋은 사례이다.¹⁸⁾

〈표 4〉 국가별 대출지원 현황

국 명	유 형	세 부 내 용
미 국	융자보조	-어업금융프로그램, 수산회복증진대출기금(알래스카) -건조기금 허용(어선성능강화/대체)
캐 나 다	융자보증	-융자보증, 융자보증(영세기업/기관)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융자보조	-이자환급
독 일	융자보조	cutter 어업 융자보조, 자본비용 절감지원
일 본	융자보조	어선현대화기금 이자보조, 수협 이자비용 공제
노르웨이	융자보조	선단 현대화(이자율/어선건조융자), 이자보조금/선박건조지지
페 루	융자보증	FONDEPES-시설/선박/장비
포르투갈	융자보조 (이자보조)	선박변형/개선, 기계/기타 어선장비 구입, 어구구입, 중고어선 구입, 어선구입/건조, 어선수리/개조, 어선비치용 공구/기계, 어선건조/구입/변형
터 키	융자보조	산초관리프로그램, 이자양허
영 국	융자보조	Highland 어획기회 제한(선박/가공/양식업용자)
베 트 남	융자보조	Soft Loan 프로그램(어업보트 건조/개선)

18) 이광남등, WTO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협상과 수협의 대응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1.12. pp.72~75를 참고하기 바람.

3) 세계혜택 및 보험 지원프로그램

세계혜택 및 보험 지원은 크게 어업용 유류세 면제, 선박보험 등으로 구별된다. 먼저, 어업용 유류 면세의 경우는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태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표 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세제상 혜택(면세) 또는 환급제(소득세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박보험의 경우는 캐나다, 일본, 대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박(재)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에 어업용 유류혜택에 대해 살펴보면,¹⁹⁾ 일본의 경우, 어업용유류에 대한 감면세는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7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감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용 유류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때, 유종별로 A중유의 경우, 제품수입에 대한 관세 2,620엔/kl과 석유세 2,040엔/kl가 면제 되어 합계 5,820엔/kl이 면세되고 있다. 또한, 석유세는 석유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조세특별조치법 제90조의4의 적용 받고 있으며, 경유의 경우는 지방세인 도로세가 32,000엔/kl이 면제되어 시중가격 7~8만엔/kl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²⁰⁾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고속도로 운영체제에서 운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고속도로 운영체제에 따른 유류세 수익기금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어선에 사용되는 어업용 유류에는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연간 약 USD 150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²¹⁾ 또한, 본래 미국의 조선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어선개조기금이 소득세 부과연기 프로그램으로 전용되었다.

호주는 어업용 유류에 대해 면세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업용디젤(경유)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제도이다. 1996-1997년 호주 남동해역의 어업 연료비용은 척당 평균 AUD80,700(1996-97)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것은 총어업비용의 약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같은 해 어업전체의 환불액은 약 AUD1.93백만(1996-97)달러이다. 또한, 세금감면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부문을 정부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그 사례로 자본비용과 구조

19) 이광남등, WTO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협상과 수협 의 대응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1.12., pp.66~71를 참조하기 바람.

20) 일본의 어업용유류 감세 혜택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1999년 기준),

- 총 수입량 : 약 380,000kl(총 공급량의 14.6% 차지)
- 관세혜택(제품수입에 대한 관세 2,620엔/kl) :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7
380,000kl(190만 D/M) × 2,620엔 = 995,600천엔(약 100억원)[A]
- 석유세 혜택(제품수입에 대한 석유세 2,040엔/kl)
380,000kl(190만 D/M) × 2,040엔 = 775,200천엔(약 78억원)[B]
- (A) + (B) = 약 178억원

- 일본 국내공급 어업용 유류의 세계 혜택 추정(1999 기준)
- 총 일본 국내에서 공급하는 양 : 2,602,740kl(총 공급량의 85.4% 차지)
- 도로세(지방세)혜택 32,000엔/kl : 조세특별조치법 제90조의4
2,602,740kl × 32,000엔 = 83,287,680천엔(약 8,330억원)

- 총 혜택 추정 : 178억원(수입혜택) + 8,330억원(국내공급 혜택) = 8,508억원

21) 하와이주의 경우는 상업적어업어선(Commercial Fishing Vessels Fuels)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 광 남

적 개선지출은 당해 연도 세금공제, 자본비용 USD3000달러²²⁾ 이상의 경우 특별세 공제의 투자공제, 어업인 세율을 당해 기준으로 지난 4년에 대한 평균소득에 따라 소득평균화, 소득평균화 예탁금(정책상의 예탁금)은 세금공제 및 인출시 과세, 당해 발생 세금손실은 이월되어 공제 대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석유에 대한 천연석유(Mineral Oil)세 환급 및 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70년 부가가치세 세율이 11%에서 두배로 증가((20%(90), 22(93), 23%(95))로 증가하였으나 종전 세율을 유지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세계상 어선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에 대하여도 1년에 한번씩 기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 받는다(연말정산 후 차액 돌려 받는것). 아이슬란드에서도 세금감면 제도(정산하여 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의 조업일수에 기초한 특별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다.²³⁾ 이것은 현재 어업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⁴⁾

〈표 5〉 국가별 세제혜택 및 보험 지원 현황

국 명	유 형	세 부 내 용
미 국	유류세 면제	디젤/가솔린 소비세 면제
호 주	유류세 면제	디젤 연료비 환급
캐 나 다	선박보험	선박보험 계획
아이슬란드	소득세 유예	조업일수 기초 소득세 공제
아일랜드	유류세 면제	LPG소비세 면제, 유류세 면제
일 본	선박(재)보험	어업신용기금 보조금, 어선손실 재보험어업재난 상호지원보험
	누적적 평가절하	어선 감가상각(세금징수 유예)
	유류세 면제	관세/석유세/도로세 면제
노르웨이	소득세 지불유예	세금 환급/면제
대 만	선박(재)보험	해상보험(어선/어업인)
태 국	유류세 면제	디젤 가격절감 프로그램

4) 자본 및 인프라 지지프로그램

자본 및 인프라 지지는 조사대상 약 30여개국 중에서 26개국(EC전체 포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엄격히 말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 호주정부가 OECD/COFI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였기 호주 화폐단위 그대로 인용하였음.

23) 세액공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세액의 공제를 받는 어업자는 전체의 약 95% 정도 됨.

24) 전계서, pp.66~71 참조.

주요 수산국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항시설 지원(가장 많음), 선단재편/현대화, 미끼시설지원, 수산기업 금융개발, 제3국 어업수역 접근, 영세어업인 지원, 특정해역내 운송 지원, 수산자원개발합작사업기업 설립, 제3국 수역내 합작기업 지원, 어민용 항구 편의시설 등이다.

<표 6> 국가별 자본 및 인프라 지지 현황

국명	유형	세부내용
미국	선단재편/현대화	어업재정 지원, 어구손실보상, 어선 신규(재)건조, 재난기금
	정부투자	주정부/수산업전체 지원
	어항 인프라 강화	어항 지지
EU	선단재편/현대화	선단재편 직접 지급
	어항 인프라 강화	어항 편의시설
	수산기업용 개발금융	어업안정성 확보 재정, 어업안정성 확보 재정, 영세연안어업지원
	해외시장개척자금	제3국 어업수역 접근 지원
노르웨이	선단재편/현대화	선단지원, 선박건조용 금융공여
	수산기업 개발금융	특정어업지원, 개발지원/어업합리화, 특정어업 지원
	국가투자(국영)	합작기업의 선단효율성 향상지원(시장지지/에너지보존 조치)
	미끼 서비스	연승미끼시설지원, 기타비용절감 지원
	기타	특정해역내 운송지원, 운송비 절감
스페인	선단재편/현대화	어업선단재편 및 현대화, 선박건조지원, 선박현대화지원
	정부투자(국영)	수산자원개발합작기업설립, 어업분야의 일시적 비즈니스협력, 제3국 수역내 합작기업 지원
	어항 인프라 강화	편의시설 향상, 편의시설 지원

주) WWF자료에서는 26개국 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주요국들만 선별하여 제시하였음

5) 마케팅 및 시장가격 지지프로그램

마케팅 및 시장가격 지지는 크게 수산물 소비촉진과 시장가격지지이며, 주요 지원 유형은 <표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원거리 마케팅 추가비용 보상, 시장공동운영에 따른 지원, 수산식품개발 지원, 어획량에 따라 가격지지, 수산물 소비증대, 시장개입 등이다.

이중 수산물 가격지지에 대해 주요국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경우는 어류의 산지가격 고정(고정가격과 국경 가격간의 차이와 동등한 보조)시켜 주는 가격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가격지지는 양륙금액에 따라 어업인에게 제공되며, 어업인은 보다 많은 어획량을 어획함으로써 언제나 더 많은 지지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시장가격지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획량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매년 협상을 통한 가격지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가격지지와 어획량과의 관계에 새로운 측면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협상을 통한 수산물 시장가격지지의 총 금액을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은

장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이다. 어획금액의 구성비로서 시장가격지지와 기타 정부재정 지원의 경우 어획량의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역사이클(counter-cyclical)패턴을 보이는 해도 있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수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하여 어업가격평형기금(FPEF : Fisheries Price Equalisation Fund)을 1970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하였다. 동 기금은 국가경제에서 수산물의 가격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양륙 어획물의 최저가격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가격이 비교적 높으면 어업인들이 기금에 출연을 하며, 가격이 최저가격이하로 하락하면 누적된 기금을 사용하여 수익을 보전하게 되는 제도인데, 때대로 정부개입(대부)이 있게 된다. 이러한 기금은 가격이 비교적 높은 1990년과 1991년에 조정되었으며, 1993년에 폐지되었다.

〈표 7〉 국가별 마케팅 및 시장가격 지지 현황

국 명	유 형	세 부 내 용
미 국	수산물 유통촉진	유통촉진/개선
	시장가격지지	시장개입
E U	수산물 유통촉진	원거리 마케팅 추가비용보상
	시장가격지지	수산물 시장개입
		시장공동운영(재정보상/양도성지원/각종 보상금 등) 수산식품개발지원, 특정수산물 지원, 기타 수산물 시장가 격안정 및 가격지지
노르웨이	시장가격지지	어획량에 따라 가격지지(고정가격과 국경가격차이)
아이슬란드	시장가격지지	1970년~1993년 운영(1993년 이후 폐지)
인도네시아	수산물 유통촉진/ 시장가격지지	수산물 소비증대, 양식개발프로그램
스 웨 덴	수산물유통촉진	유통/마케팅 지원, 수출촉진
	시장가격지지	시장가격지지
대 만	수산물 유통촉진	수산물 유통촉진 프로그램

다음으로 EC의 내부시장은 간섭매커니즘(탈퇴가격, 이월원조, 일부 선어/냉장/냉동품에 대한 민영저장 원조)과 보상매커니즘(통조림용 참치)에 의한 저장가격지지시스템으로 조정된다. 지침가격에²⁵⁾ 의해 위원회는 탈퇴가격, 할인가격, 이월원조금액, 고정프리미엄, 기준가격 등을 정한다. 여기에서 기준가격은 최저가격과 역관세(countervailing duties) 등 방어수단의 도입 근거로 사용된다. 시장 매커니즘은 공인된 생산자조직이 수행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 조직의 결성 후 3년간 원조가 이루어졌다.²⁶⁾

25) 시장에서 가격지지를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임.

26) 이광남등, WTO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협상과 수협의 대응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1.12. pp.79~82.

6) 어업관리 및 보존

어업관리 및 보존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요한 지원사업 내용은 <표 8>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신어업기술, 어업관리, 선박매입(어선감척), 어업인 조정, 수산자원평가, 어업관리 및 시행, 신기술 개발 등이다.

여기에서, 주요 FFG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정보수집/분석, 사업발굴 지원, 연구개발비, 사업발굴 지원, 어업관리 집행 등이며, 뉴질랜드는 연구개발, 정책자문, 어획노력량 조정, 호주는 관리비용, 어업관리프로그램, 신기술연구 개발 용자보증, 연구비용, 영구적 폐업지원, ITQ도입에 따른 손실보상, 아일랜드는 연구개발, 관리비용, 해양안전 지원 등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TAGS & PSRS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어업관리 및 보존 고령어업인 조정지원, 어업대체, 대체고용, 선박 보상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대부분 어업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그 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어선감척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⁷⁾

<표 8> 국가별 어업관리 및 보존 지원 현황

국명	유형	세부내용
미국	신어업기술개발	정보수집/분석, 사업발굴 지원, 연구개발비, 사업발굴 지원
	어업관리	보존/관리
	어업시행	어업관리집행
뉴질랜드	신어업기술	연구개발비
	어업관리	관리, 정책자문
	어업시행	정책강화, 불법어업적발 조치
	어업인조정	어업서비스, 어획노력량 조정
호주	어업관리	관리비용 어업관리프로그램 신기술연구 개발 용자보증
	신어업기술 연구개발	연구비용
	선박매입/조업중단 허용	영구적 폐업지원
	기타	ITQ도입에 따른 손실보상
아일랜드	신어업기술	연구개발비
	어업관리	관리비용
	어업시행	해양안전
캐나다	어업인 조정	고령어업인 조정지원, 어업대체, 대체고용, TAGS*
	어업관리	어업관리, 어업관리/보존
	신어업기술 개발	어업개발 연구, 연구 및 자원평가
	선박매입	선박보상(면허폐지)
	어업시행 프로그램	어업관리집행
	어업인 재교육	TAGS & PSRS*

주) WWF자료에는 28개국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요국들만 선별하여 제시하였음

*) TAGS는 태평양저서어류 전략(Atrantlc Groundfish Strategy) 프로그램을 통한 어업인조정이며, PSRS는 태평양 연어 부양화 전략(Pacific Salmon revitalisation Strategy) 프로그램을 통한 어업인 재교육임.

27) WWF, 전세서

N. 주요국과 한국간의 비교 분석

1. 한국의 수산보조금 유형

우리나라에서 수산부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역은 먼저, 대분류로는 기르는어업육성, 자원조성, 기술지도및자원조사관리, 어업구조조정, 어선건조현대화, 어업질서유지, 어업경영지원, 어업인육성, 어가부담경감및이차보전, 수산경영개선, 어촌어항개발, 수산기술연구, 수산물직거래기반조성, 수산물일반유통기반조성,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위생안전관리, 수산물수출지원, 기타 등 16개로 나눌 수가 있다.²⁸⁾

<표 12>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유형

대분류	소분류
기르는어업육성	복합양식단지조성, 해면양식단지조성, 마을어장개발, 양식기반시설및기자재확충, 내수면어업개발
자원조성	어장정화사업, 인공어초시설, 종묘매입방류, 바다목장조성,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조성, 어업기반조성
기술지도및자원조사관리	수산기술관리소, 자율관리어업, 어업기반조성, 해외어장개발, 어업자원관리정보화
어업구조조정	국제감척, 연근해어업감척, 원양어업감척, 어업구조개편
어선건조현대화	어선건조설비대체, 폐선처리장, 어선수리소
어업질서유지	어업지도선건조보수, 시도지도선유류비, 어선안전조업지원, 어업지도첨단단속장비확충
어업경영지원	영어자금공급, 수산발전기금, 공제료보조, 유류운반저장, 수산정보화, 어망생산운영자금, 어업용면세유, 면세기자재
어업인육성	어업인육성, 수산계교육
어가부담경감및이차보전	영어자금이차보전, 계획조선이차보전, 경영안정특별자금이차보전, 귀어가창업자금 이차보전, 해외자원생산자금이차보전, 어가부채경감대책이차보전, 기타이차보전
수산경영개선	조합경영개선자금, 법인이촌계정비, 회원조합경영진단비, 해상조합필수사업장인수자금, 수협사료시설, 어업용유류저장시설, 수협유통경영개선지원
어촌어항개발	국가어항건설, 지방어항건설,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민속전시관, 어항관리위탁운영
수산기술연구	수산기술연구시설, 수산기술연구운영, 해양수산과학종합망, 특정과제연구, 자원 조성환경평가, 기르는어업육성기술개발,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및산업화, 수산공학기술산업화연구, 수산식품위생안전위해관리센터
수산물직거래기반조성	수산물직거래판매시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산지종합처리시설운영
수산물일반유통기반조성	도매시장건립개보수, 위판장및폐수처리시설, 수산물물류표준화, 유통구조개선및 실태조사, 유통정보화, 농안기금
수산물가공산업육성	감척수산물가공단지조성, 가공처리시설, 가공업체경영지원, 남북수산협력, 수산물수요개발
수산물위생안전관리	수출입수산물관리, 검사시설장비확충
수산물수출지원, 기타	수산물수출촉진, 기타

28)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현황은 몇몇 논문 및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른 분류방법을 이용해 현황을 파악하였음.

주요 수산국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이에 따른 소 분류로는 84개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 지원사업의 주체 및 주관은 중앙 정부(해수부), 지방정부(지자체), 수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 등이라고 할 수 있다(<표 12 참조>).

2. 한국에 없는 수산보조금 유형 분석

주요 FFG과 수산보조금 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WWF 대분류 기준 5개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수산보조금의 유형과 지원방법 등이 나타났으나, “마케팅 및 가격지 지”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원 형태가 거의 유사하여 특이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WWF의 대분류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보조금의 유형이나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지원방법이 상이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1) 어업인과 어업노무자에 대한 직접지원

우리나라에 없는 보조금의 유형중 어업인과 어업노무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우리나라에 없는 어업인 및 종사자에 대한 직접보조금 현황

세 부 유 형		국 명	금액(백만불)	
			96	97
금어기 설정 및 조업일시 중단 지원	연어어업 금어기설정에 따른 보조금	핀 란 드	-	0.8
	어업의 일시중지에 따른 보조금	프 랑 스	4.5	3.9
	일시적 어선철수 지원	이탈리아	38.9	0.08
	제한된 조업중단에 따른 지원	스 페 인	-	7.75
	일시조업중단에 따른 선주지원	노르웨이	7	8.36
	어업활동 일시중단 지원	스 페 인	0.5	-
	소득보장보상/휴업지지/실직보험 등	노르웨이	3.9	-
어업인 소득지지	어업인 소득지지	벨 기 에	93.3	
	자가어업/고용어민 특별소득지지	캐 나 다	-	167
실직보험	어업인 실직보험	스 웨 덴	4.8	-
	어업인 실직보험	캐 나 다	141.7	132
운반비 보조	운반비(운송비) 보조	핀 란 드	-	0.6
	특정해역 운송비 지원	노르웨이	4.5	5
컨설팅 보조		덴 마 크	0.3~0.4	0.37~0.4
선원고정임금 지지 보조금		벨 기 에	0.13	0.08
Book-Keeping 프리미엄 보조금		벨 기 에	-	0.01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스 페 인	-	28.6
생산자 지원(수산물 폐기분)		스 웨 덴	-	0.5

이 광 남

구체적인 유형은 <표 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금어기 설정 및 조업 일시 중단 지원, 어업인 소득지지, 어업인 실직보험, 운반비 보조, 컨설팅, 선원 고정임금지, Book-Keeping 프리미엄 보조금,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자 지원(수산물 폐기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출지원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자금에 대한 시중금리에 대한 차액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유사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으나,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용자보조금에 대한 이자환급제도와 일본의 이자비용공제 제도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우리나라에 없는 대출지원 보조금 현황

세 부 유 형		국 명	금액(백만불)	
			'96	'97
이자환급	용자보조금 이자환급	핀란드	0.02	-
	"	프랑스	-	13.5
	"	이탈리아	1.2	1.2
이자비용 공제	수협 이자비용 공제	일본	52.7	23.1

3) 세제혜택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업용 유류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지원은 미국, 아일랜드, 태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어업용 유류에 대해 국가에서 환급제도 및 소득세 지불 유예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용 유류에 대한 환급제 및 소득세 공제제도는 우리나라의 어업용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 주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효과에 대한 결과는 거의 같으나 지원방법상의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이하다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법의 차이점은 해당국가들의 세제상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우리나라에 없는 어업용 유류 혜택

세 부 유 형		국 명	금액(백만불)	
			'96	'97
환급제도	디젤연료비 환급	호 주	7.8	-
	석유세 환급제도	노르웨이	-	34
소득세 지불 유예	조업일수 기초 소득세 공제	아이슬란드	21.9	18

4) 자본 및 인프라 지지

우리나라에 없는 자본 및 인프라지지 보조금 형태는 정부투자 형태에 있어서 수산자원 개발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일시적인 비즈니스 협력, 합작기업의 선단효율성 향상지원 등을 해주는 경우이다. 또한, 제3국 어업수역 접근을 지원해주는 시장개척자금, 어구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6〉 우리나라에 없는 자본 및 인프라지지 보조금 현황

세 부 유 형		국 명	금액(백만불)	
			'96	'97
정부투자	수산자원개발합작기업 설립	스페인	01.7	16.1
	어업분야의 일시적 비즈니스 협력	스페인	15.8	3.4
	합작기업의 선단효율성 향상지원	노르웨이	1.8	2
해외시장개척자금	제3국 어업수역 접근 지원	EC	-	238.5
어구지원	신규선박/어구도입지원	일본	22.9	20.9
	어구손실 지원	스웨덴	0.2	-
	어구손실 보상	미국	1	0.2

5) 어업관리 및 보존

우리나라에 없는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ITQ도입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으며, 어업인 조정 부문에서는 고품어업인 조정지원, 어업대체 및 대체 고용, 어획노력량 조정시 어업인들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우리나라에 없는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 현황

세 부 유 형		국 명	금액(백만불)		
			'96	'97	
어업관리	ITQ도입에 따른 손실보상	호주	-	1.7	
어업인 조정	고령어업인 조정 지원	캐나다	7.8	4.5	
			어업 대체	6.1	1.1
			대체고용	0.6	-
			어획노력량 조정	2.7	2.3
	프랑스	2.7	2.4		
	네덜란드	1.7	1.4		
	뉴질랜드	-	1.4		
	포르투갈	-	5.3		
스웨덴	2	0.9			

3. 분석 종합

주요 수산국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없는 수산보조금의 형태는 어업인(종사자 포함)에 대한 직접지불, 자본 및 인프라 지원, 어업관리 및 보존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영어자금과 같은 시중금리 차액 지원은 제도상의 차이(지원방법)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우리나라에 없는 수산보조금 종합

구 분	유 형	비 고
어업인 직접지불	급여기 및 조업일시 중단에 따른 지원	우리나라 없음
	어업인 (특별)소득 지지	
	실직보험금 지원	
	운반비 보조	
	컨설팅 보조	
	선원고정임금 지지 보조금	
	Book-Keeping 프리미엄 보조금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자 지원(수산물 폐기분)	
대출지원	이자환급	지원방법 상이
	수협 대출이자 공제	
자본 및 인프라 지원	정부직접 투자	우리나라 없음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어구지원	
어업관리 및 보존	ITQ도입에 따른 손실보상	우리나라 TAC시행
	고령어업인 조정 지원	우리나라 없음
	어업대체	
	대체고용	
	어획노력량 조정에 따른 어업인 조정	

V. 정책 방향 및 협상전략 제시

WTO/DDA 최근협상 동향과 수산보조금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FFG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약 30여개 국가들의 수산보조금 현황 파악을 통하여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내정책과 협상전략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²⁹⁾

29) 기존의 몇몇 논문 및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들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동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힘.

1. 국내정책방향

1)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 필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FFG을 중심으로 수산보조금이 무역 및 시장을 왜곡하고, 자원을 감소시키는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감축 또는 철폐가 주장되고 있어 기존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론, 향후 WTO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국내보조금 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이 WTO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부정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원금액에 대한 대폭적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수산업은 그 동안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산업과 비교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WTO의 논의대로 수산보조금이 감축된다면 산업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제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산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내보조금의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재편방향에 맞추어 각 세부항목별 정책대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보조금들은 확대하여 추진하되, 어업인 직접지불과 관련된 금어기 및 조업일시 중단시 지원, 어업인 소득지지, 실직보험, 컨설팅 보조, 선원임금 고정지지,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지원, 특정지역의 연안어업자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 및 지원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업관리에 있어서는 TAC도입에 따른 손실보상, 고령어업인·대체 고용·어획노력량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제안서를 고려한 대응

지금까지 수산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WTO/DDA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이 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수산보조금의 철폐 및 축소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보조금이 국내어업의 어획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의 위임을 받아 검토·연구한 결과를 2000년 7월 5일 열린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7.5~6, 제네바)에서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수산보조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동 제안서에서 긍정적 보조금은 어업관리, 단속, 수산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지원보조금과 어선감척,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부정적 보조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부융자(영어자금등), 어업용 면세유 보급, 건조지원, 외국입어 경비지원, 해외합작지원, 정부수매사업, 수출보조, 가격지지 사업 관련 보조금 등이라고 제시한바 있다.³⁰⁾

30) 전게서, pp.45~52.

그 다음으로 WTO/DDA 협상이후, 제7차 규범회의시 미국의 제안서(03.03)에 따르면, 수산보조금 분류방식을 기존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SCM)협정 틀안에서 금지보조금(적색), 조치가능 보조금(황색), 허용보조금(녹색) 등의 이른바 교통신호와 같은 분류방식 적용을 제안하였으며,³¹⁾ 금지보조금의 확대와 병행하여 “dark amber” category를 만들고, 보조금 지급국가가 해당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서와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금지보조금(Red)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보조금으로는 어선건조 현대화(노후 연안어선 대체, 어선기관대체, 장비설비개량, 기계공급), 어업경영지원(영어자금 공급, 공제료 보조, 면세유류, 면세기자재 등), 어가부담경감 및 이차보전(영어자금이차보전, 계획조선 이차보전, 경영안정특별자금이차보전, 해외자원생산자금이차보전 등), 수산물직거래기반조성 중에서 농안기금 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서에 따른 금지보조금(적색)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해당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협상전략 수립

1) 지원방식의 차이 주장을 통한 협상목표 달성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며,³²⁾ 우리나라의 협상목표는 i) 현행 WTO 보조금 협정의 틀을 최대한 유지, ii) 규제대상 보조금 범위를 최소, iii) 허용보조금 최대한 확보, iv) 충분한 이행기간 및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FFG는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불(금어기 및 조업일시중단에 따른 지원, 실적보협금 지원, 운반비 보조 등), 자본 및 인프라지원의 정부직접투자, 해외시장개척자금지원, 어구지원, 어업관리 및 보존을 위한 어업인 조정 문제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여건상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국가들은 세계상의 혜택 및 융자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수산보조금 분류방법 및 금지보조금 확대에 대한 논의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FFG는 자국들의 기존 보조금 지급형태가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불제 형태로의 전환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협상의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우리

31) 금지보조금(적색, red), 조치가능 보조금(dark amber), 허용보조금(녹색, green).

32)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나라의 경우 긍정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직접지불 형태로의 보조금 전환에 따른 시간적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에 유리한 수산보조금 분류방식 개발

그 동안 제안된 국제기구의 수산보조금 분류 논의 핵심은 FAO의 경우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OECD는 정부의 재정이전 지출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WTO, APEC, 미국 등은 환경 및 무역에 미치는 왜곡효과와 보조금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WTO규범회의(2003. 제 6,7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수산보조금의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7차 회의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보조금 분류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분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규제대상 범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보조금 분류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WWF 분류 기준안(APEC 기준안과 동일)으로 분석해본 결과, 비분류된 보조금이 96/97년간의 국가별 규모(백만불)로 벨기에(0.04/0.03), 덴마크(1.5/0.3), 프랑스(8.8/7.6), 독일(0.3/0.2), 그리스(0.2), 아일랜드(0.08), 포르투갈(0.15/0.14) 등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WTO규범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FFG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수적인 열세에 있으며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어려운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향후 협상의 방향은 기존 쟁점(Sectoral vs General)에 대한 협상과 병행하여 각 국의 수산보조금규모 및 종류 등 조사 실시, 현행 WTO/SCM 개정, 각 보조금별 규제방법 및 감축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수산보조금을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주요 FFG의 수산보조금 현황을 파악한 이후,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산보조금 정책 방향 및 협상전략 수립에 대안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수산분야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금번 협상을 통해 무역이나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 규제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번 고비를 비교적 잘 넘기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유명한 UR 협상이 끝난 지 약 6년만에 WTO/DDA 협상이 시작되었듯이 WTO/DDA가 끝나면 또 다른 WTO 협상이 우릴 기다리고 있고 보조금 및 관세감축이 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광 남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수산보조금의 감축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협상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우리 수산업이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의의는 지금까지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몇몇의 논문과 더불어 관련보고서들이 있었으나, 수산보조금의 축소 및 감축을 주장하는 FFG과의 수산보조금에 대해 비교·분석한 내용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는 각 국의 보조금 유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분류상 및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어업인 소득지지, 운반비 보조(특정해역), 컨설팅지원, 선원 고정임금지, Book-Keeping 프리미엄 보조금,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자 지원(수산물 폐기물), 어구지원, 어업관리 및 보존을 위한 어업인 조정 등이다.

따라서, 향후 FFG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산보조금 내용들을 추가로 파악하여 협상시 중요한 자료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정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명섭·주문배, WTO 뉴라운드하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연구, 수산경제학회, 1999.
- 이광남등,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0. 12.
- 이광남, 수산보조금 논의동향에 대한 한국의 입장, APEC 수산물 무역세미나, 2001.5
- 이광남등, WTO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협상과 수협의 대응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001. 12.
- 주문배등,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1999.
- 수협중앙회, 어업용 저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분석, 2001. 3.
- 한국수산회,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관련 종합적 연구, 2002. 11.
- 한국수산회,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2. 11.
- 해양수산부·KMI,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2001. 6.
- 해양수산부·KMI,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 확보, 2003. 2.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내부자료, 2002.
- FAO, "Report of Expert Consultation on Economic Incentives and Responsible Fisheries", *FINAL DRAFT*, 2000.
- Milazzo, Matteo, "Subsidies in the World Fisheries : A Reexamination",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406,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98.
- OECD, "The Economic Impact of Responsible Fisheries on Production and Management", *AGR/FI(99)3*, 1999. 3.

- _____, "The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Sustainability for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AGR/FI(99)3/Rwv11*, 1999. 10.
- _____,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 Best Practic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Series No. 22*, Paris. 1988
- UNEP, "Fisheries Subsidies and Overfishing : Towards a Structured Discussion", *UNEP*, 2001.
- WTO/CTE, "Environmentally-Harmful and Trade-Distorting Subsidies in Fisheri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T/CTE/W/154*, 2000.
- WWF, "Hard Facts, Hidden Problems : A Review of Current Data on Fishing Subsidies", *A WWF Technical Paper.*, 2001.10.
- [http : //momaf.go.kr/bbs/wto_gong_view](http://momaf.go.kr/bbs/wto_gong_view).
- [http : //www.mofat.go.kr/ko/division/wto_menu_list](http://www.mofat.go.kr/ko/division/wto_menu_list).
- [http : //www.kiep.go.kr/main.nsf/fmMainFrame](http://www.kiep.go.kr/main.nsf/fmMainFrame).
- [http : //docsonline.wto.org/gen_home](http://docsonline.wto.org/gen_home).

Comparative Analysis on Fisheries Subsidies between Major Countries and Korea

Lee, Kwang-Nam

Abstrac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sheries subsidies of the major FFG(Fish Friends Group) which argue the elimination and the phasing-out, to compare with Korea's subsidies categor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of fisheries subsidies polic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 the future.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sidies between the major FFG showed that WWF(World Wildlife Fund) fisheries subsidies categories, with the exception of Marketing and Price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supporting type and methods, differ from those of Korea. Also, The unique type of WWF Fisheries Subsidies, which is beyond Korea's subsidies, are Direct Payment for Fishermen and Fishery Workers, Capital & Infrastructure Support, Fishery Management and Protection, etc. In case of capital support and fisheries fuel, the payment method or other institutional backgrounds i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nation.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s Fisheries subsidies policy as follows ; First, developing new policy methods and supporting ways such as Direct Payment for Fisherman is needed. Second, Converting fisheries subsidies category expected to be classified to Red Amber into another type of non-negative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demonstrating that these kinds of subsidies give no negative effect to the environment and the trade. Third, Reviewing the categorize system of Korea's subsidies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is necessary as well.

In respect to WTO/DDA, the watchful analysis of Korea's fisheries program must be preceding in ahead of making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Korea firstly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while the major FFG can directly pay for fisheries section, other nations have no choice but supporting in preferential tax or loan manner. Using this kind of strategy, it is may enlarge the negotiating power in the WTO/DDA to reflect fully Korea's position.

Key words : FFG(Fish Friends Group), WWF(World Wildlife Fund), Category, Direct Payment, Fisheries Subsidies.